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910
----------	-----

2009년 6월 26일  
도시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9. 6. 26 상정 ·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주택국장 : 김 효수)

개정된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가 이를 매입 및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항목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세출항목에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 3. 12 ~ 4. 1)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종식)

-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6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 이는 2009년 2월 3일 개정(시행일 5월 3일)된 주택법에 따라(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항목에 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임.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법 제73조에 근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동 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 조례 제4조에서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세입항목에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항목에 각각 추가하여 세입·세출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8조 본문 중 “제16조에 따라”를 “제14조에 따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0
----------	-----

제출년월일 : 2009년 6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가 이를  
매입 및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항목에 “임대  
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세출항목에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  
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2 ~ 4. 1)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

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6. 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8.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  
금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 ②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상환
  5.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6.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7. 국민주택의 관리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의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  
한 경비
  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도시·주거환경정  
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호 ·

제30조의2에 따라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징수금
3. 법 제6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융자금
4. 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5. 법 제68조에 따라 양야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6.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세 전입금
7. 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8.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1.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2.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14.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수입금

②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5호·제30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3.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4. 법 제60조·제6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포함)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6.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금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8.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 사업비
9.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
10.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11.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종전의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특별회계 자금(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라 한다)을 사업 시행자 등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금등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다.

**제8조(채권보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방법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잔액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등의 수납)** ① 시장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납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체납하는 자에 게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전에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상환금 등의 강제징수)** 특별회계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등의 상환이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한 자는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금 운영특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 제6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의 범위 안에

서 시장이 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융자금등상환대장 작성·보관
2.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각 계정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계정의 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u>별도의</u>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제2조(계정의 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u>따로</u>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제3조 (관리·운영) ①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p>	<p>제3조(관리·운영)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p>
<p>제4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p>	<p>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p>

2.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
6.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신 설〉

8. 기타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 ②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5.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융자 또는 보조
  6.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7. 국민주택의 관리 및 특별회계의 운영

2.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6. 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8.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 ②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상환
  5.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융자 또는 보조금
  6.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7. 국민주택의 관리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8. 기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호 ·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징수금
3.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융자금
4. 제2항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6.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전입금
7. 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8.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의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호 · 제30조의3에 따라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징수금
3. 법 제6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융자금
4. 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5. 법 제68조에 따라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6. 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세 전입금
7. 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8.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 |  |  |
|--|--|
| 8. 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10.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10.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11.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
| 11.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 12.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
| 12.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
|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 14.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수입금<br>②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 기타 정비사업 관련 수입금<br>②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0조제5호·제30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경비  |
| 1. 법 제30조제5호·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경비  | 2.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
|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  | 3.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
| 3. 제1항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 4. 법 제60조·제6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
| 4. 법 제60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

- |  |  |
|--|--|
| <p>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u>보조 및 융자</u></p> <p>6.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u>융자</u></p> <p>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p> <p>8.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u>주택사업비</u></p> <p>9.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p> <p>10.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u>반환</u></p> <p>11. 기타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p> | <p>6.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u>융자금</u></p> <p>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p> <p>8.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u>주택 사업비</u></p> <p>9.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p> <p>10.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u>반환금</u></p> <p>11.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p> |
|--|--|

제8조 (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특별회계 자금(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라 한다)을 사업 시행자 등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국민주

제6조(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특별회계 자금(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라 한다)을 사업 시행자 등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금등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다.

제8조(채권보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채권보전) 국민주택 기금 읍자금을 읍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방법에 의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잔액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 등의 수납) ① 시장은 국민주택 기금 읍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납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민주택 기금 읍자금 등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제12조 (상환금 등의 강제징수) 특별회계 읍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을 읍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방법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잔액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등의 수납) ① 시장은 국민주택 기금 읍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납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체납하는 자에게는 「국민주택 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민주택 기금 읍자금 등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전에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상환금 등의 강제징수) 특별회계 읍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등의

제13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등의 상환이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택이나 기타 시설 등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한 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금 운

영특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 제63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환이 부진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한 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금 운

영특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 제6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이 조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임·위탁) ①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상환대장 작성·보관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각 계정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융자금 등상환대장 작성·보관

2.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각 계정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